

인천검단 AA10-2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08.05(금)]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08.05.(금)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2.08.05.)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자에 한합니다.
-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 인천광역시 관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 본 단지는 영구임대(298호)와 국민임대(854호, 별도공급)의 혼합단지로, 입주시기는 '24년 2월 예정이며 공사진행에 따라 입주일정이 다소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 신청을 원하시는 1개 단지 내 1개 주택형만 신청 가능합니다.(우선공급, 일반공급 중복신청 시 무효)
- ※ 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81-3번지 일원 인천검단AA10-2블록 영구임대주택 298호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공급 형별	세대 수	세대별 계약면적(m ²)				합계	모집호수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일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기타 공용	주차장		계	주거 약자 용	우선 공급 (가목)	우선 공급 (나목)	우선 공급 (다목)				일반 공급
26Ab	234	26.11	15.7591	2.8123	11.6241	56.3055	234	-	23	23	23	165	2604동 2605동 2606동	철근 콘크 리트/ 지역 난방	'24.2월 예정
26Ab (주거약자)	56						56	-	-	-	-				
26Bb	6	26.06	15.7748	2.8070	11.6018	56.2436	6	-	1	1	1	3			
26Bb (주거약자)	2						2	-	-	-	-				

- ※ 영구임대 중 일부세대가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전용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공급)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변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단지배치 특성 상 일부 세대는 사다리차의 접근이 어려워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이삿짐 전문업체 등과 실측 및 협의해야 합니다.
- ※ 우선 공급 신청미달로 인한 잔여세대수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 영구임대 전 형별(26Ab, 26Bb, 주거약자형포함)에는 벽걸이형 에어컨이 기본설치 됩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당첨자에 한해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임대조건 ※신청자격에 따라 가군/나군 임대조건이 적용됨

주택형	적용 구분	기본 임대조건(원)				전환가능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5%)	잔금(95%)				
26Ab/ 26Ab (주거약자)	「가」군	2,603,000	130,000	2,473,000	51,850	(+) 4,000,000 (-) 1,000,000	6,603,000 1,603,000	31,850 53,930
	「나」군	15,630,000	781,000	14,849,000	119,270	(+) 14,000,000 (-) 12,000,000	29,630,000 3,630,000	49,270 144,270
26Bb/ 26Bb (주거약자)	「가」군	2,598,000	129,000	2,469,000	51,750	(+) 4,000,000 (-) 1,000,000	6,598,000 1,598,000	31,750 53,830
	「나」군	15,615,000	780,000	14,835,000	119,150	(+) 14,000,000 (-) 12,000,000	29,615,000 3,615,000	49,150 144,150

-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 ※ 위 임대조건외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 각 주택형별 「가」군(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나」군(일반 등) 적용구분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릅니다.(「가」군, 「나」군 임대조건 적용대상은 "5.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방법"을 참고)

- 「가군」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 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3.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구분	신청기간	신청장소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계약체결기간 및 장소
우선·일반 주거약자	2022.08.16(화) ~08.19(금) (10:00~17:00) ※ 현장접수만 가능	인천광역시 관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만 가능	2022.12.07.(수) (17:00이후) LH청약센터 (1600-1004)	2022.12.20(화)~12.22(목) (10:00~16:00) LH인천지역본부 고객접견실(1층) ※ 현장계약만 가능

- * 청약신청은 인천광역시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 신청기간 내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여도 신청기간 이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 * 신청인원이 모집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세대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하며 계약체결 가능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 동호배정 발표 후 선정되신 분에게는 개별 휴대폰 문자안내 예정이며, 미선정되신 분은 별도 안내가 생략됩니다.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영구↔영구, 국민↔국민)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청약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 순으로**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4.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05.)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무주택세대구성원(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무주택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개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 분양권,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12.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예비신흠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65세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 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타 공사 포함)에 거주중인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공급신청 후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해지신청 및 명도 후 입주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세부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월평균 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 : 나목(국가유공자 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1인 70%, 2인 60%) 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2.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1인가구	2,248,479원 이하	2,890,902원 이하
	2인가구	2,906,622원 이하	3,875,496원 이하
	3인가구	3,209,283원 이하	4,492,996원 이하
	4인가구	3,600,405원 이하	5,040,566원 이하
	5인가구	3,663,036원 이하	5,128,250원 이하
6인가구	3,889,913원 이하	5,445,878원 이하	
7인가구	4,116,789원 이하	5,763,505원 이하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산	1. 자산기준 적용 신분(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4,200만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의 경우 **관련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충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9조의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5.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방법

■ 우선공급 배정호수

단지명	공급 형별	계	우선공급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마목
			국가유공자 등	귀환국군포로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수급자	수급자중 자녀가 있는 자
인천검단 AA10-2 블록	26Ab	69	23	23	23	별도배정
	26Bb	3	1	1	1	호수없음

■ 우선공급(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마목)

대상자	입주자격	임대조건
가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 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자 * 국가보훈처의 선정기준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나목	- 귀환한 국군포로로서 국방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다목	-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군
마목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 다목(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가」군

※ 우선공급 대상 중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인 자」의 경우만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귀환국군포로,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자 중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은 일반공급 대상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마목(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은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배정됩니다.

■ 신혼부부 우선공급(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2022.08.05) ①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로서 ②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③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으로서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7조 제1항 제1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가)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자 나)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경우 ②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동점인 경우 추첨)			
	구분 및 배점	3점	2점	1점
	미성년 자녀수 (태아포함)	3명 이상	2명	1명
	인천광역시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
혼인기간	3년 이내	3년 초과 5년 이내	5년 초과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2인 모두 신청시 중복신청에 해당하여 무효처리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분리된 세대를 구성할 예정인 경우 각각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모두 포함), ③ 신청자가 속하게 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공급신청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과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하는 세대구성원 명단이 일치하여야 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주택명 : 인천검단 AA10-2블록 영구임대, 주택관리번호 : 2022000482]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이 가능할 경우	한국감정원 주택청약서비스 접속(www.applyhome.co.kr)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이 불가능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자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자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마목)**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순위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임신중인 경우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자녀 수가 많은 사람 ② 2순위 :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 주거약자용 주택은 별도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 [「6. 입주자 선정 방법 (주거약자용 주택)」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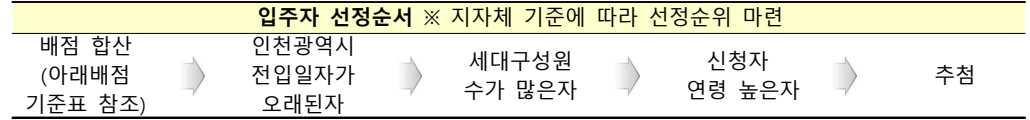
순위	내용	입대조건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가」군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사.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가」군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 '수급자 선정기준'의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를 뜻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269호 제2조 제2항에 따라 일반공급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의 나목(국가유공자 등)은 모집하지 않습니다.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 일반공급, 국가유공자등(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우선공급에 적용



※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별도의 배점 기준이 있음

■ **(일반공급) 배점기준표 - 공고일(2022.08.05.) 기준**

구분	배점		배점기준(대상자)
	100점		
1. 인천광역시 거주기간 (30점)	1년 미만	22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인천광역시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1~5년 미만	24	
	5~10년 미만	26	
	10~15년 미만	28	
2. 신청자 연령 (25점)	15년 이상	30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만40세 미만	19	
	만40~만50세 미만	21	
	만50~만60세 미만	23	
3. 세대구성원수 (신청자 포함) (30점)	만60세 이상	25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1~2인	24	
	3인	26	
	4인	28	
4. 가 점(7~15점)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5인 이상	30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15 (유형 3가지)		
	13 (유형 2가지)		
7	11 (유형 1가지)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6.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란?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사람)
-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⑥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치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8.05.)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주거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순위	대상자(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제2호 가목 해당자)	임대조건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가」군
	나. 유공자 등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군
	사.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사람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가」군
2순위	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3순위	나. 유공자 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군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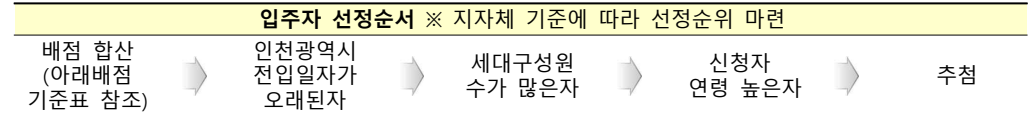
-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증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수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 급회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1~3순위만 모집하며 4, 5순위는 1순위 미달시 추후 모집할 예정입니다.
- ※ '수급자 선정기준'의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3호 의료급여 수급자를 뜻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구 분		배 점
총계		9
1. 신청자 연령 (2점)	만70세 이상	2
	만65세 이상~만70세미만	1
2. 세대구성원(신청자 본인 포함)이 2인이상인 경우		1
3. 인천광역시 거주기간 (3점)	10년 이상	3
	5년 이상~10년 미만	2
	1년 이상~5년 미만	1
4. 장애정도(세대원포함)	장애의 정도 심한 장애인	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 인천광역시 거주기간 : 신청자가 인천광역시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7.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2.08.05. 이후 발행분에 한함))

구비서류	비 고	비고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별지1-1호, 1-2호 서식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대상자 : 임대주택 신청자 · (작성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확인서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별지2호 서식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합정보)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별지3호 서식 별지4호 서식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별지5호 서식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주민등록표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자만 제출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1통
신청자격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자만 제출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각 1통
기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자만 제출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호보상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호보상대상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행정복지센터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증빙서류	관련기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귀환국군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예비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공사양식),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별지6-1호, 6-2호 서식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경우)	(필수) 자녀의 기본증명서 (해당자) 입양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행정복지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배점관련 서류)	대표 신청자의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한국부동산원

8.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오류방지를 위해 담당직원과의 유선상담을 통한 당첨확인은 불가합니다.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일 : 2022.12.07.(수) 17: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태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하며, 변경불가 합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 및 동호배정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고객센터 - 임대주택 - 당첨조회(주민등록번호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개별적으로 동호를 확인할 수 있고,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당첨/낙찰자조회에서는 접수번호, 이름 등으로 당첨여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기간 경과시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당첨자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사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합니다.
- 입주대상자(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며, 입주대상자(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이후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안내 ※현장계약만 가능합니다.

- 계약기간 : 2022.12.20.(화) ~ 2022.12.22.(목) 10:00~16:00 *점심시간12~13시제외
- 계약장소 : LH인천지역본부 1층[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사정에 따라 현장계약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대상자에 한하여 문자메세지 안내 예정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시 제출서류(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제외) ※ 신청시 제출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이관되지 않으므로 계약시 새롭게 추가 제출해야 함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단 위장명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만 가능)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증명서류 배우자 외 대리인 (인감증명명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조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명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당첨자 도장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것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가능하며, 현장수납은 불가하오니 계약금을 계약 전 미리 납부 하신 후 계약장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구분	유의사항
임대대상 및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휴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사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의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및 계약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 •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청자격, 소득,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의 범위는 ‘세대구성원(자적검증대상)’과 동일하며,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공급신청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과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하는 세대구성원 명단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됨)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입주대상자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자(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및 계약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 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우리공사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복입주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
자동차등록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2년의 경우 3,557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가능하며 개인별 차량 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 차량의 개별 소유지분과는 무관함)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 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계약 전 지구 및 단지특성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지구 및 단지 의견	<p>■ 지구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당하동 일원으로 인천검단 택지개발지구 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해지구에는 일반분양-공공분양-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리츠활용 임대주택 등 여러 유형의 아파트 건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해지구 토지이용계획 등의 확인을 통하여 단지 주변 시설 및 구조물(지하차도, 보도육교, 생태육교, 변압기, 버스정류장 등)계획을 확인 후 계약에 응해야 하며, 구조물로 인한 소음 및 미관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지 요구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당해지구의 개발사업은 현재진행 중이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제영향평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에너지사용계획,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각종 상위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토지이용 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 사업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해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 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해지구 내 공공청사는 법원, 검찰청, 파출소, 소방서, 행정복지센터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해당 관청의 건립시기 조정 및 건립계획 보류(취소)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해지구 외부에 다수의 묘지, 경작지, 축사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해지구 내 학교, 공공시설 등의 용지는 해당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p>■ 단지 외부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단지는 도시계획도로에 면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먼지 및 진동,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본 단지는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조성공사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 후 조성공사 및 주변 아파트 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단지 인근에 인천영여마을, 계양천 등이 위치하며, 인천검단지구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통하여 단지 주변 외부 여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단지는 인천광역시청에서 북측으로 15km, 김포에서 2.8km, 서울도심에서 20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단지의 동서측으로 원당로, 검단로, 국도 48호선, 드림로, 인천공항고속도로가 지나며, 남북측으로 서울 외곽순환고속국도, 국도98호선, 장제로, 봉수대길 등 간선도로가 사업지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 단지는 가현산과 계양산이 연결되는 광역녹지축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존형 녹지폭 확보 및 계획적 개발로 광역 녹지축 복원 및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업지 서부에서 북동측으로 관류하여 한강으로 합류하는 나진포천과 사업지 중심부에서 남동측으로 유하하는 계양천이 주수계를 형성하며, 그 외 북측에서 나진포천으로 합류하는 갈산천, 남측에서 계양천으로 합류하는 신기천 등의 소하천과 곳곳에 지류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p>■ 단지 내부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지상 12~24층 규모입니다. 지붕은 전체동 평지붕이 설치되고,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로 시공됩니다. 주차대수는 지상 303대, 지하 489대로 총 792대입니다. (근린생활시설 내 지상주차대수 4대 포함) 단지 출입구에는 주차관제설비(차량출입통제)가 설치됩니다. (주차관제설비로 인해 다수의 차량이 동시 진출입시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4항, 제5항 및 제16조에 의거 전기차 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충전기 2대, 완속충전기 6대로 총 8대 설치되며, 이동형 충전장치용 콘센트가 8개 설치될 예정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에 따라 지하주차장의 통로부분에 한하여 높이는 2.7m입니다.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평면도, 배치도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인택배보관함이 각동 1층에 설치됩니다.(설치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지내 주요시설에 안전관리 및 범죄 예방목적의 CCTV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단지내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가 계획되어 있고 명칭은 인접도로 사용조건과 특별한 인과성이 없으며, 단지외 도로현황 및 시설계획은 본사업과 관련이 없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가용 지상변압기함은 상가인근 단지 경계부에 설치되며 주거용 지상특고압스위치함은 단지내 부출입구 인근 북동측 경계부 조경공간에 설치되며 위치변경은 수용이 불가하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602동 옥탑층에 지상파(UHD디지탈) 안테나 및 무궁화5호, 6호 위성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 수신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층에 피뢰침이 설치되며 2601동, 2602동 2603동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설치됩니다. 공공주택성능등급의 예비인증내용이 본 인증 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p>■ 일조권·조망권·사생활 침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동별,호수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 환경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각종 전후면에 식재되는 수목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 부대시설 파라펫 및 옥상난간 등에 따라 시각적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에 동력 및 무동력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냄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장치)는 2602동, 2606동 옥상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차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단 설치장소 및 설치수량은 이동통신사 사정(전파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각 동 지붕층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태양광 발전설비 태양광모듈의 빛산란에 따라 일부세대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태양광모듈 및 사양에 따라 각 동별 설치면적은 달라질 수 있음) 관리사무소, 보육시설 및 경로당 등 부대시설의 외부 또는 지붕층에 에어컨 및 냉·난방기 실외기가 설치되어 가동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품보관소 등이 아파트 전후 측면에 설치되어 있어 저층세대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수거 차량의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의 보안등·가로등과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음 및 전조등으로 인해 1층 및 저층세대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실내 운동공간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휴게데크 등 주동 내 주민공동시설의 인접세대에서는 해당시설 이용에 따른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가에 인접한 세대는 추후 입점되는 상가의 종류에 따라 음식냄새 및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각 동 1층 부대시설 등의 지붕(옥상)과 연결되어 있는 세대는 방범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며 부대 시설 냉난방 설비기 설치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조망권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동 옥탑층에 각종 환 냉난방기용 실외기 및 통기배관 등이 설치되어 인접 세대로의 소음 및 냄새 전달 우려가 있습니다. <p>■ 임의점유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도 및 엘리베이터 홀과 같은 공간은 공용부위이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도·조경공간·휴게데크·주민공동시설·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각 동 1층 부대시설 등의 지붕(옥상)과 연결되어 있는 세대는 해당 지붕(옥상)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p>■ 계획여건에 따라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 및 대수는 계획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시설물의 위치·구조·규모·색채와 지반고 등은 추후 측량결과, 지반현황 및 각종평가, 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층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 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명칭·동표시·아파트 문양·비로고·벽체줄눈 및 외관디자인(색채, 패턴 등)은 추후 관계기관 심의결과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내 식재 시설물 포장 등 조경계획 및 색채디자인은 추후 관계기관 심의결과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내 조정, 식재, 포장계획은 각종 인허가 또는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료형태·색채·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내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아니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단지내 비상차량 동선과 폭은 소방서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포장재질, 색채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p>■ 세대별 여건차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며,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천장 일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 현관 옆 복도벽체에는 타 세대 가스계량기가 함께 설치될 수 있습니다. (사용량 및 사용료 발생은 해당 세대에 부과됩니다.) • 단지배치 특성 상 일부 세대는 사다리차의 접근이 어려워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이삿짐 전문업체 등과 협의해야 합니다.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해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팜플렛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주차장은 단지 배치상 동별 주차대수, 동 출입구 개수, 출입동선 길이 등이 균등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주차구획이 주동 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계획되어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 보관대는 단지 전체 법정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단지 내 분산 설치되나, 동별로 동일한 수량이 동일한 위치에 설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광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다르므로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이상부 주차장계획 및 주차램프위치로 인해 저층부 세대는 소음, 야간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면변화에 따라 층간소음 및 단열 등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별 승강기 설치는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의 적합한 규격으로 설치되며, 동별 승강기의 규격(인승, 속도)은 각 동 층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p>■ 기타 공통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PIT층은 소방법규에 따라 출입구가 점검구조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 기계실(열교환실), 소방펌프실, 지하저수조 및 아파트 PIT내 집수정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복도창호 및 계단창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장마철 높은 습도로 인해 지하주차장 및 지하 엘리베이터 홀 등에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 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 단지 내·외부 여건, 혐오시설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동측, 남측)은 향후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단지 서측 출입구는 타 단지(24단지) 출입구와 마주보고 있어 차량 진출입시 혼잡할 수 있습니다. • 승강기 내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가 설치되나, 별도의 에어컨 설비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승강기 내부의 공기유입은 에어컨 설비가 아닌 공기청정기 및 환기팬에 의한 사항임)
세대 내부여건 (마감재 및 발코니 등)	<p>■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전용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 마감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하여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 가구, 타일, 석재, 바닥재, 벽지 등의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의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팜플렛 등에 적용된 자재 중 관계법령 등에 저축될 경우나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p>■ 주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 마감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설치부위의 비도출면은 별도마감 없습니다. • 주방가구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및 주위 배관 등이 설치되므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에 용이하지 않습니다. • 주방 가스렌지 설치대 상부에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p>■ 발코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입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출통,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는 배수용 드레인 및 입상관이 설치됩니다. • 발코니 내 설치된 세탁실은 별도의 구획된 출입문이 없이 개방된 공간에 설치됩니다. • 발코니 일부세대 간 벽체가 경량칸막이로 시공되어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선출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되며 이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난간대에는 국기계양대가 설치될 예정이며 타입별·세대별 설치 위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간 쉽게 파괴되는 구조의 칸막이벽이 설치되어 화재시 옆세대로 대피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발코니 칸막이벽이 없는 세대는 완강기가 설치됩니다(3층에서 10층까지) <p>■ 세대내 설치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구임대 전형별(26Ab,26Bb,주거약자형포함/298세대)에는 벽걸이형 에어컨(세대당 1개소)이 설치 될 예정입니다. • 미세먼지 대응 등 환기성능 향상을 위한 세대내 전열교환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거실과 실외기실 사이 벽체에 에어컨배관구가 상·하 2개소 설치될 예정입니다. • 각 세대 내 현관에는 전기통신 통합단자함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37㎡(국민)타입 현관에는 시스템선반이 설치되며 별도의 구획된 문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46㎡(국민)타입 복도측 침실 창문에는 방범용 방충망이 설치되나, 이와 별도의 방범시설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p>■ 기타 공통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사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 벽걸이 TV 설치를 위한 별도의 보강은 없습니다. (내장벽만 해당, 골조벽인 경우 보강 없이 설치 가능) •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대용량 가전제품(냉장고, 인덕션, 세탁기, 건조기 등)의 경우 전기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의 일부세대 경계부위에는 일정한 힘으로 파괴할 수 있는 자재로 시공되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를 위하여 샘플하우스(현장 견본주택)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설치되는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명칭과 동번호는 관계기관의 협의결과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안내드립니다. • 입주예정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행사를 실시하며, 사전방문행사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내 세탁기 장소가 협소하여 사이즈가 큰 규격의 세탁기는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입주 전 사전 방문행사 시 정확한 치수 및 세탁기 반입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 일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구분	유의사항
	<p>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 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장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관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 질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검토를 위하여 샘플하우스(현장 견본주택)로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치 않습니다. 단지 내에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내부시설(장비, 비품,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시설이며, 공동주택단지와 별도의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주거시설과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입주 후 발코니 태양광 모듈 전지판 설치 등은 낙하위험성 등으로 원칙적으로 설치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만약 설치시 시설물관리주체인 관리소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명칭, 동 표시, 아파트 문양, C1로고, 벽체 줄눈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세대는 입주 시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팜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팜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CG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쇄 상에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팜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징컷 등은 신청차(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가·오탈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팜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특성 및 거주자의 생활환경 차이 등으로 증강, 세대 간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10. 주택성능등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9호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아래 공동주택성능등급은 예비인중 내용으로, 본 인중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1) 소음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충격을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을 차단성능	★
3.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소음	★

2) 구조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3) 환경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해당없음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해당없음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해당없음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해당없음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종물질의 사용 금지	해당없음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해당없음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해당없음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해당없음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3) 환경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해당없음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비오름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해당없음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4) 생활환경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텐츠	★

5) 화재·소방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호너비	★
6. 피난설비	★

11.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인천검단 AA10-2 블록	한국토지주택공사	에스지씨이테크건설(주) [214-81-89369] 봉림종합건설(주) [131-81-64568] 대륙전기(주) [610-81-37846] (주)화진이엔씨 [121-81-63524] (주)창공건설 [121-86-40583] (주)고도네트웍스 [121-81-64300]	-	(주)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주)나로이엔씨 (주)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창

12.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재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13.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주거약자용 주택)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 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의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조명밝기 600 ~ 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지체·뇌병변 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청각 장애인
	수건걸이 높이조정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 ~ 400럭스(lux)	청각 장애인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 장애인

-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가능합니다.
-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 고령자 단독 거주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동체감지기가 설치되어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입주시 별도 신청 필요)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을 경사로 단차 없애기 출입문 방향 조정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출입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욕실 (1개소에 한함)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주방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가스밸브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거실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비디오폰 높이조정 시각경보기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세대내 1개소 설치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애 3급이상 5.18민중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LH인천지역본부 검단사업단 주택사업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중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22.12.20~12.22)
 - ※ 계약체결기간 내 미신청시 설치불가하오니 신청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음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음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인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생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p>8. 정신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調絢情動障礙)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p> <p>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p> <p>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p> <p>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정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p> <p>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 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 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p> <p>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p> <p>14. 장루·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p>

<p>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p> <p>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p> <p>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p>
--

15.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 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 급여 등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달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 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 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이에 달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 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 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 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16. 문의처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청 및 인천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평일 09:00 ~ 18:00)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8. 05.



[별지 1-1호서식]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일반/우선공급-앞면, 신청자작성)

영구임대주택(일반/우선공급)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주택 신청 유형	단지명	인천검단AA10-2블록 영구임대	전용면적	26Ab,26Bbm ²	가구원수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순위	전화번호	휴대전화() - 집 전화() -	해당 시·도 /시·군 전입일	년 월 일		
	우선공급	<input type="checkbox"/> (시행규칙 별표3 2호 가목)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1인 90퍼센트, 2인 80퍼센트) 이하 인 자 <input type="checkbox"/> (시행규칙 별표3 2호 다목) 혼인 중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 1순위 :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자녀가 있는 경우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혼인기간 3년 이하, <input type="checkbox"/> 혼인기간 3년 초과 5년 이하 <input type="checkbox"/> 혼인기간 5년 초과 7년 이하) ① 혼인신고일() ② 미성년(만19세미만, 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 자녀수 ()인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시·군) 거주여부 ()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input type="checkbox"/> (시행규칙 별표3 2호 마목)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미성년(만19세미만, 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 자녀수 ()인				
일반공급	1순위	<input type="checkbox"/>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일본군위안부피해자 <input type="checkbox"/>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사람 <input type="checkbox"/> 만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input type="checkbox"/>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input type="checkbox"/> 만65세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한 사람을 말함)				
주택 및 자산 현황	<input type="checkbox"/> 무주택세대구성원 <input type="checkbox"/> 총자산가액 이하 <input type="checkbox"/> 자동차가액 이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하며, 주택 및 자산현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총자산 및 자동차는 해당 기준요건이 필요한 입주자 자격의 경우 작성합니다. (2022년도 기준가액 총자산 24,2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3. 주택소유 및 자격·소득·자산(총자산 및 자동차),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 여부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1-1호서식]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일반/우선공급-뒷면,지자체에서 작성)

대상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 (우선공급 중 다목·신혼부부에 적용)						
구분 및 배점		확인내용		배점기준		
미성년자녀수 (태아포함)	3명이상	2명	1명	<input type="checkbox"/> 재혼 시 전혼자녀 포함(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한함) ※태아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진단서 첨부 <input type="checkbox"/> 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기간 <input type="checkbox"/> 혼인신고일로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 기준으로 산정		
인천광역시 연속 거주기간	3년이상	1년이상	1년미만			
주택정액저축 납입횟수	24회이상	12회이상	6회이상			
혼인기간	3년이내	5년이내	7년이내			
대상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 (일반공급 / 우선공급 중 가목·국가유공자등에 적용)						
구분		배점	득점	배점기준(대상자)		
1. 인천광역시 연속 거주기간 (30점)	1년 미만	22	<input type="checkbox"/> 신청자 기준 <input type="checkbox"/>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인천광역시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1년 이상 ~ 5년 미만	24				
	5년 이상 ~ 10년 미만	26				
	10년 이상 ~ 15년 미만	28				
2. 신청자 연령 (25점)	15년 이상	30	<input type="checkbox"/>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			
	만40세 미만	19				
	만40세 이상 ~ 만50세 미만	21				
3. 세대구성원수 (신청자포함) (30점)	만50세 이상 ~ 만60세 미만	23	<input type="checkbox"/>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첨부			
	만60세 이상	25				
	1~2인	24				
	3인	26				
4. 가 점(7~15점)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4인	28	<input type="checkbox"/>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 <input type="checkbox"/> 유형1: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유형2: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input type="checkbox"/> 유형3: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input type="checkbox"/> 유형4: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input type="checkbox"/> 유형5: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input type="checkbox"/> 유형6: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input type="checkbox"/> 유형7: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input type="checkbox"/> 유형8: 귀환국군포로			
	5인 이상	30				
	7	7		<input type="checkbox"/>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 <input type="checkbox"/> 유형1: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input type="checkbox"/> 유형2: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재대군인 <input type="checkbox"/> 비수급자로서 아래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 <input type="checkbox"/> 유형1: 국가유공자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유형2: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input type="checkbox"/> 유형3: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3년 이상 부양자 <input type="checkbox"/> 유형4: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input type="checkbox"/> 유형5: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input type="checkbox"/> 유형6: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input type="checkbox"/> 유형7: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input type="checkbox"/> 유형8: 귀환국군포로		
총점		점		행정복지센터 확인자 (인)		
서류편철순서	<input type="checkbox"/> 신청자격증빙서류[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유공자영구임대주택지원대상증명서 등] <input type="checkbox"/> 등본 <input type="checkbox"/> 초본 <input type="checkbox"/> 가족관계증명서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동의서 <input type="checkbox"/> 예비입주자증복불가사항확인서 <input type="checkbox"/> 금융정보제공동의서 <input type="checkbox"/> 자산보유사실확인서 <input type="checkbox"/> 기타증빙서류					

[별지 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을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보법」 제36조 제4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00시도지사/ 000시군구청장
-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신청순서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보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차인 불법 양도·전대 확인,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구분	제공 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 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지속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 입주내역
소득	<input type="checkbox"/>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제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input type="checkbox"/>	· 토지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input type="checkbox"/>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등

-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복지보조회)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보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 양도·전대 입자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 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행자 및 만족도 조사 업무 수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이하)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한국부동산원 우정사업본부

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소득·재산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행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 내역, 거주관계사항
임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행자	임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좌번호
한국부동산원, 금융결제원	임주자지속 가입내역 확인, 임대료 결제(지로 자동이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계좌번호, 지문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등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사항

다.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민감정보(장애 유형, 장애정도 등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2~5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경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

7. [선택] 본인은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처: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홍보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주민등록번호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바. 이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8. [필수] 본인은 위 1~7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9.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별지 4호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6. 20.)

[양면]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주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계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¹⁾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²⁾ (서명 또는 인)
본인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 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_____년 _____월 _____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금을 신청(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금을 신청하거나 제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제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제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5호서식]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기타 자산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임차보증금	예 <input type="checkbox"/>			원	[임차인]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임차인]	
	분양권	예 <input type="checkbox"/>			원	[수분양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input type="checkbox"/>			원	[주주(보유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출자지분	예 <input type="checkbox"/>			원	[출자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input type="checkbox"/>			원	[임대인]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임대인]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예 <input type="checkbox"/>			원	[차주]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차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되어야 함) *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되어야 함)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인)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별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파태료) 입주자자격, 해당철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